|  |  |  |
| --- | --- | --- |
|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보감발[2011]30호  각 보험회사: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감독의 진일보 강화, 보험가입인의 이익보호, 보험시장의 안정 및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당 위원회는《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 잠행방법》(보감발 [2007]66호(이하 《잠행방법》)을 수정하였으며,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방법》(이하 “본 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공포하는 바,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기존 법률과 현행 법률의 효과적인 연결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각 보험회사는 이미 적립한 자본보증금 예금액이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다른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예금보관 은행이 본 방법의 규정에 불부합 하나 《잠행방법》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자본보증금 예금의 만기도래 후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은행에 이전예치 할 수 있다.  2. 예금보관 지역이 본 방법 규정에 불부합 하나 《잠행방법》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자본보증금 예금의 만기도래 후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지역에 이전예치 할 수 있다.  3. 단일 자본보증금 금액이 인민폐 1,000만 위안(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화폐)이하 인 경우, 보험회사는 만기도래 후 개정해야 한다.  4. 《자본보증금 예금협의》의 조항이 본 방법 규정에 불부합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 예금의 만기도래 후 새로운 자본보증금 예금 협의서를 작성할 때 이를 개정해야 한다.  5. 본 방법 규정에 불부합 하는 기타 문제는 반드시 수정 및 정정해야 한다.  각 보험회사는 본 방법과 대조하여 자본보증금의 적립, 비안과 처리상황에 대해 자체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2011년 8월 5일 전에 서면 자가검사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1년 7월 7일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안정 및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보험회사라 칭하는 것은 보험회사 감독관리 기구를 거쳐 설립을 비준받고, 법에 의거하여 등기등록된 상업 보험회사를 뜻한다.  **제3조** 본 방법이 자본보증금이라 칭하는 것은 《보험법》규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성립 후, 그 등록자본금 총액에 근거하여 20%를 인출한 경우, 보험회사 청산 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용할 수 없는 자금을 뜻한다.  **제4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보감회”)는 법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자본보증금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보험회사의 자본보증금 적립, 처리 등 행위는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5조** 보험회사는 “정액(足额), 안전, 안정”의 원칙에 따라 자본보증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장 예치보관(存放)**  **제6조** 보험회사는 2개 이상의 상업은행을 선택하여 자본보증금의 예치보관 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예치보관 은행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전국적 중국자본 상업은행  (2) 직전년도 말 순자산 인민폐 200억 위안 이상  (3) 직전년도의 자본충족율, 불량자산율이 은행업 감독관리부문 유관규정에 부합  (4) 완벽한 회사 관리구조 구축, 내부 회계감사 통제제도와 리스크 통제제도 구축  (5) 본 회사와 이해관계 없음  (6) 최근 2개년도에 중대한 위법, 법규위반기록이 없음.  **제7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을 보험회사 법인기구 주소지, 직할시, 계획단열시 또는 성 정부 소재지 도시의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제8조** 보험회사는 독립적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자본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제9조** 자본보증금 예금 예치기간에 만약 예치보관 은행이 본 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본보증금의 안전예치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예: 중대한 위법, 법규위반 사건으로 인해 감독관리 부문의 처벌, 자본충족율 부족 등의 상황이 발생), 보험회사는 즉시 중국보감회에 보고하고 자본보증금 예금을 규정에 부합하는 은행에 이전 예치해야 한다.  **제10조** 보험회사는 중국 보감회에 개업 비준 30일 업무일 이내 또는 등록자본금(운영자금) 증액 비준 후 30일 업무일 이내에 자본보증금 전액을 규정시간에 따라 중국 보감회가 규정에 부합하는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제11조** 보험회사는 아래의 형식으로 자본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1) 정기예금  (2) 거액협의 예금  (3) 중국 보감회가 비준한 기타형식.  **제12조** 자본보증금 예금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모든 자본보증금 예금의 금액은 인민폐 1000만 위안(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화폐)보다 적을 수 없다. 보험회사가 등록자본금(운영자금)을 인민폐 5000만 위안(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화폐)보다 적은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증자부분에 대해 자본보증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14조** 보험회사가 자본보증금을 적립하는 경우 예치보관할 은행의 본점 또는 1급 지점과 《자본보증금 예금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중국 보감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계약 쌍방이 독자적으로 협의를 철회할 수 없다.  **제15조** 보험회사는 예치은행에 자본보증금 보관 증빙서류를 요구해야 하며, 배서를 진행해야 한다: “본 예금은 자본보증금 예금이다.” 예금은행이 중국 보감회의 서면 비준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예금인의 예금성질 변경, 예금원금의 본 예치은행 출금이체 및 기타 본 예금의 처리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예금은행이 심사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피 운용 자본보증금 금액 내에서 보험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제16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 예치 후 10일 업무일 내에 중국 보감회에 사후 비안을 처리해야 한다. 보험회사 사후 비안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자본보증금 예금 비안문서  (2)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비안표(1식2부)  (3) 《자본보증금 예금협의》 원본 1부  (4) 자본보증금 증빙서류 사본 및 증빙서류 배서 사본  (5) 중국 보감회가 보고를 요구한 기타자료  **제17조** 보험회사는 외화 자본보증금 예금의 환율변동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해 자본보증금 총액(인민폐 환산)이 20일 업무일 연속 보험회사 법정 요구액보다 적을 경우, 다음 업무일부터 5일 업무일 이내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보증금을 충족시키고 관련 사후 비안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8조** 중국 보감회는 사후비안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사후비안 처리 또는 사후비안 거절 서면회답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중국 보감회 사후비안을 거치지 않았거나 중국 보감회가 사후비안을 거절한 경우, 자본보증금 예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의 아래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보감회의 사전 비준을 득해야 한다.  (1) 기한만료 시 예금성질 변경  (2) 사전인출  (3) 기타은행에 이전예치, 동일한 은행소속 분지기구 간의 이전예치 포함  (4) 청산 시 자본보증금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  (5) 등록자본(운영자금)감액 시, 자본보증금 일부인출  (6) 자본보증금의 기타 운용과 처리행위.  **제21조** 보험회사가 기한만료 시 예금성질 변경을 신청하거나 자본보증금의 사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보감회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자본보증금 처리 신청문건  (2)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처리 신청표  (3) 처리할 《자본보증금 예금 협의》사본  (4) 처리할 자본보증금 예금 증빙서류 사본 및 증빙서류 배서 사본  (5) 예치할 자본보증금 비안자료 (본 방법 제16조 요구에 따라 제공)  (6) 중국 보감회가 보고를 요구한 기타 자료.  **제22조** 보험회사가 자본보증금을 동일한 은행소속 분지기구 간의 이전예치를 포함한 기타 은행으로 이전예치를 신청하는 경우,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항목의 자료 이외에 중국 보감회에 《자본보증금 예금협의》(초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보험회사 청산 시 자본보증금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국 보감회에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항목의 자료 이외에 중국 보감회가 비준한 보험회사 청산문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보험회사 등록자본금(운영자금)을 감액하고 자본보증금의 일부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보감회에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항목의 자료 이외에 중국 보감회가 비준한 보험회사 감자(减资)문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중국 보감회는 보험회사의 자본보증금 처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비준 또는 비준거절의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6조** 청산 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을 운용할 수 없다.  **제27조** 예치기한 내에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 예금성질을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 자본보증금 예금은 융자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본 방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본보증금을 적립, 처리하는 경우, 중국 보감회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진행한다.  **제4장 부 칙**  **제30조**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지주회사와 보험그룹기업의 자본보증금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1조** 본 방법은 중국 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2조**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보감발[2007]6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1. 자본보증금 예금 협의 (기본조항 예시)  2.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처리 신청표  3.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비안표 |  | **关于印发《保险公司资本保证金管理办法》的通知**  保监发〔2011〕39号  各保险公司：  　　为进一步加强对保险公司资本保证金的监管，保护投保人利益，维护保险市场的平稳、健康发展，我会对《保险公司资本保证金管理暂行办法》（保监发〔2007〕66号，以下简称“《暂行办法》”）进行了修订，制定了《保险公司资本保证金管理办法》（以下简称“本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为实现新旧办法的有效衔接和平稳过渡，各保险公司对已经提存的资本保证金存款不符合本办法规定的，应区分不同情况进行处理：  　　一、存放银行不符合本办法规定，但符合《暂行办法》要求的，可在资本保证金存款到期后再转存入符合本办法规定的银行。  　　二、存放地点不符合本办法规定，但符合《暂行办法》要求的，可在资本保证金存款到期后再转存入符合本办法规定的存放地点。  　　三、单笔资本保证金存款金额低于人民币1000万元（或等额外币）的，保险公司应在存款到期后予以更正。  　　四、《资本保证金存款协议》的条款不符合本办法规定的，保险公司应在资本保证金存款到期后，签订新的资本保证金存款协议时予以更正。  五、对不符合本办法规定的其他问题，应予以整改和纠正。  　　各保险公司应当对照本办法对资本保证金的提存、备案和处置情况进行自查，并于2011年8月5日前提交书面自查报告。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二〇一一年七月七日  **保险公司资本保证金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对保险公司资本保证金的管理，维护保险市场平稳、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以下简称《保险法》），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保险公司，是指经保险监督管理机构批准设立，并依法登记注册的商业保险公司。  **第三条** 本办法所称资本保证金，是指根据《保险法》的规定，保险公司成立后按照其注册资本总额的20%提取的，除保险公司清算时用于清偿债务外不得动用的资金。  **第四条**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中国保监会”）依法对保险公司资本保证金进行监督管理，保险公司提存、处置资本保证金等行为应符合本办法规定。  **第五条** 保险公司应遵循“足额、安全、稳定”的原则提存资本保证金。  **第二章 存 放**  **第六条** 保险公司应当选择两家以上商业银行作为资本保证金的存放银行。存放银行应符合以下条件：  　　（一）全国性中资商业银行；  　　（二）上年末净资产不少于200亿元人民币；  　　（三）上年末资本充足率、不良资产率符合银行业监管部门有关规定；  　　（四）具有完善的公司治理结构、内部稽核监控制度和风险控制制度；  　　（五）与本公司不具有关联方关系；  　　（六）最近两年无重大违法违规记录。  **第七条** 保险公司应将资本保证金存放在保险公司法人机构住所地、直辖市、计划单列市或省会城市的指定银行。  **第八条** 保险公司应当开立独立银行账户存放资本保证金。  **第九条** 资本保证金存款存放期间，如存放银行不符合本办法规定，或者存在可能对资本保证金的安全存放具有重大不利影响的事项（如，因发生重大违法违规事件受到监管部门处罚、资本充足率不足等），保险公司应及时向中国保监会报告，并将资本保证金存款转存至符合规定的银行。  **第十条** 保险公司应在中国保监会批准开业后30个工作日或批准增加注册资本（营运资金）后30个工作日内，将资本保证金按时足额存入符合中国保监会规定的银行。  **第十一条** 保险公司可以以下形式存放资本保证金：  　　（一）定期存款；  　　（二）大额协议存款；  　　（三）中国保监会批准的其他形式。  **第十二条** 资本保证金存款存期不得短于一年。  **第十三条** 每笔资本保证金存款的金额不得低于人民币1000万元（或等额外币）。保险公司增加注册资本（营运资金）低于人民币5000万元（或等额外币）的，对增资部分应当提存一笔资本保证金。  **第十四条** 保险公司提存资本保证金，应与拟存放银行的总行或一级分行签订《资本保证金存款协议》。未经中国保监会批准，合同双方不得擅自撤销协议。  **第十五条** 保险公司应要求存放银行对资本保证金存单进行背书：“本存款为资本保证金存款。存款银行未见到中国保监会的书面批准，不得同意存款人变更存款的性质、将存款本金转出本存款银行以及其他对本存款的处置要求。存款银行未尽审查义务的，应当在被动用的资本保证金额度内对保险公司的债务承担连带责任。”  **第十六条** 保险公司应在资本保证金存妥后10个工作日内向中国保监会事后备案。保险公司事后备案时应提交以下资料：  　　（一）资本保证金存款备案文件；  　　（二）保险公司资本保证金备案表（一式两份）；  　　（三）《资本保证金存款协议》原件一份；  　　（四）资本保证金存单复印件以及存单背书复印件；  　　（五）中国保监会要求报送的其他材料。  **第十七条** 保险公司应密切关注外币资本保证金存款的汇率波动。因汇率波动造成资本保证金总额（折合人民币）连续20个工作日低于法定要求的保险公司，应自下一个工作日起5个工作日内，按照本办法的规定提足资本保证金并办理相关事后备案手续。  **第三章 监 管**  **第十八条** 中国保监会自收到事后备案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事后备案或不予事后备案的书面答复。  **第十九条** 未经中国保监会事后备案或者中国保监会不予事后备案的，不认定为资本保证金存款。  **第二十条** 保险公司对资本保证金的以下处置行为，应事先得到中国保监会的批准：  　　（一）到期变更存款性质；  　　（二）提前支取；  　　（三）转存其他银行，包括在同一银行所属分支机构之间转存；  　　（四）清算时使用资本保证金偿还债务；  　　（五）注册资本（营运资金）减少时，部分支取资本保证金；  　　（六）其他动用和处置资本保证金的行为。  **第二十一条** 保险公司申请到期变更资本保证金存款性质或申请提前支取资本保证金的，应向中国保监会提交以下资料：  　　（一）资本保证金处置申请文件；  　　（二）保险公司资本保证金处置申请表；  　　（三）拟处置的《资本保证金存款协议》复印件；  　　（四）拟处置的资本保证金存款存单复印件及存单背书复印件；  　　（五）拟存放的资本保证金备案资料（按本办法第十六条要求提供）；  　　（六）中国保监会要求报送的其他资料。  **第二十二条** 保险公司申请将资本保证金转存其他银行，包括在同一银行所属分支机构之间转存的，除向中国保监会提交第二十一条第（一）项、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六）项资料外，还需提供拟签订的《资本保证金存款协议》（草案）。  **第二十三条** 保险公司清算时申请使用资本保证金偿还债务的， 除向中国保监会提交第二十一条第（一）项、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六）项资料外，还需提供中国保监会批准保险公司清算文件。  **第二十四条** 保险公司注册资本（营运资金）减少，申请部分支取资本保证金的，除向中国保监会提交第二十一条第（一）项、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六）项资料外，还需提供中国保监会批准保险公司减资文件。  **第二十五条** 中国保监会自受理保险公司资本保证金处置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做出批准或不予批准的书面决定。  **第二十六条** 除清算时用于清偿债务外，保险公司不得动用资本保证金。  **第二十七条** 在存放期限内，保险公司不得变更资本保证金存款的性质。  **第二十八条** 资本保证金存款不得用于质押融资。  **第二十九条** 未按照本办法规定提存、处置资本保证金的，中国保监会将依法进行处罚。  **第四章 附 则**  **第三十条** 经营保险业务的保险控股公司和保险集团公司资本保证金的管理，适用本办法。  **第三十一条** 本办法由中国保监会负责解释。  **第三十二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实施，《关于印发〈保险公司资本保证金管理暂行办法〉的通知》（保监发〔2007〕66号）同时废止。  　　附件：1、资本保证金存款协议（基本条款示例）  　　 2、保险公司资本保证金处置申请表  　　 3、保险公司资本保证金备案表 |